



“소주주세율 인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겠다는 주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의 주세법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중류주의 세부담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과 2003년말 국회에서 맥주주세율 인하를 결정하면서 정부에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입각한 주세율 개편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정부도 내년도부터 소주세율 인상을 발표하고 2005. 9. 13(화) 조세연구원에서 주세율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론으로서 소주세율 인상 법안에 대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소주세율 인상반대를 결정하였으나 2005. 9.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주세율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여부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결판 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당협회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주세율 인상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주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대중주입니다.

소주는 노동자들과 샐러리맨들이 힘든 하루 일과 후에 가장 즐겨 찾는 술입니다. 소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주로서 서민의 정서와 애환을 흡뻑 담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전체 주류 소비지출 중 소

주 소비자출이 크고, 고소득계층일수록 위스키나 맥주 소비지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서민층의 경우 전체 주류 소비 중 52.4%를 소주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위스키(25.3%)와 맥주(42.4%)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주의 세율이 인상되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소주 한 잔 하며 시름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서민이 봉이냐, 소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마셔야 할 판 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주소비가 사회적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는 근거가 미약 합니다.

알콜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상승의 책임을 소주 소비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잘못된 발상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과 질환 진단기준인 DSM-IV에서도 알콜 중독 진단기준에 주 음용주류의 도수, 음주빈도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주소비가 곧 알콜 중독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음주 사고의 원인인 만취상태는 음주자의 체질, 신체 상태, 음주시 주변 분위기에 따라 저도주의 대량 음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한 검증 가능한 연구 결과가 없는 가운데 “고도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혼선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1997년부터 음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50억원의 소비자보호사업비를 조성하여 전음주문화정책과 알콜문제 예방, 치료,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주는 고도주가 아니며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의 적용은 통상마찰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소주를 위스키와 같은 고도주로 분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2004년 9월 8일자 연합뉴스와 12월 1일자 YTN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알콜도수 24도 이상을 고도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소주는 대부분 21도에서 24도로서 맥주와 와인과 같이 분류되어 알콜 판매 면허 없이 음식점에서 자유스럽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바 있어 소주를 고도주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음주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알콜도수 21%인 소주 한병(360ml)의 주세(715원)가 알콜도수 4%인 맥주 한병(500ml)의 주세(1,110원)보다 낮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포도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할 때 종류주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콜도수 21인 소주를 “고도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 관념입니다.

한편 1999년 한-유럽연합 및 미국간 WTO주세패널 및 상소심 판정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종류주에 동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의 주제체계 개편을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하여 소주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넷째 소주산업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주산업의 경우 각 지역을 기반으로 10개사가 1도 1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주세율 적용으로 인해 소주 판매가 감소할 경우 특히 지방의 소규모 소주와 주정제조업체가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이것은 극심한 지역 경제 침체와 국가 균형 발전의 후퇴로 이어 집니다. 전국에 걸쳐 기반을 갖고 있는 소주산업과 주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은 쌀보리 등 국산 양곡 판매량을 상당 수준 확대해줌으로써 어려운 우리 농촌의 살림살이에도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도 소주와 같은 국산 전통주류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대중주, 민속주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주의 경우 선진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전통과 문화가 다르듯이 제각기 나라를 대표하는 국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와인, 독일의 맥주, 영국의 위스키, 일본의 청주 등은 국주라는 인식 하에 나름대로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이들 주류는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자국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들의 자부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한껏 고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들은 독자적인 주세율 체계를 통해 국주를 수출주도형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위스키등 종류주에 한해서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알콜도수와 관계없이 리터당 동일세율을 적용하면서도 포도주는 알콜도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스키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종량세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주인 청주에 대해 소주, 위스키, 맥주보다 저렴한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포도생산과 자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산 포도주 제품은 0 또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면서 수입 위스키, 종류주 등에는 고율의 관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여 외국산 주류의 소비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국내 대표적인 주류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류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류는 소주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이고 경쟁력 높은 제조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소주시장에서는 수입산이 전혀 발불일 여지가 없으

며 국부 유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독보적인 주종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년 1억 불이상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좀더 노력한다면 우리의 소주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함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서민적’이라는 캐릭터로 인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중주인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여 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 서민들이 즐겨 음용하는 국민 대중주로서, 소주 한 잔에 담겨 있는 서민적 흥취와 소주만이 갖는 독특한 대중 문화적 가치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자국의 대표적인 국주를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소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로서 소주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먼 후대까지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소주의 주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날 텐데도 서민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면서 까지 무리하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경제 규모의 확대로 인해 주세의 재정수입 확보 기능은 점차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내국세 중 주세의 비중이 10% 수준에 이르던 것이 2003년에는 3%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정도로 주세의 재정 수입 기여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주세율 조정은 조세 수입 확보 차원이 아니라 서민 생활의 안정 및 주류산업의 성장과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을 더 걷어 들이겠다는 발상은 고소득층에는 고세율을 저소득층에는 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기본 틀을 깨뜨리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주 세율인상(안)을 철회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아울러 조세 형평도 제고하는 것이, 참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